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mpensation Calculation Standard for Dust Damage in Construction Sites

김진호*

Kim, Jin-Ho

요약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먼지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공사장 먼지피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예측, 평가가 어려워 먼지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장 먼지관리의 법적기준이며 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의 준수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피해배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안이 제도화된다면 건설사는 먼지피해 배상액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층 더 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에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먼지로 인한 환경, 보건 법규위반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노동 생산성 확보와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지급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Keywords :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농도 측정, 평가, 배상액 산정기준

1. 서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현장근로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먼지로 인한 피해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환경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지만, 측정·예측·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기각되거나, 소음피해 배상액의 5~30%를 적용하는 등 적정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지는 관리를 잘 못하여 분쟁이 발생해도 적절하게 피해배상이 되지 않고 있어서 관계기관의 비산먼지 특별점검 기간 중 일부 배출공종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장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장 먼지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2. 본론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인한도 초과 여부, 초과 시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거나 예측 및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광판식 고정식 측정기는 실제 설치된 전광판 측정기 분석 결과 공사장의 먼지발생에 의한 요인보다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이어서 공사장에서 발생된 먼지 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고, 3개 공사장에서 실제 측정된 결과도 측정장비의 특성과 공사장의 특성,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장비별로 특정장비는 농도치가 상이하게 나타났고, 강우, 풍향, 풍속, 온도, 습도에 따라 큰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먼지 예측 모델링에 적용되는 배출계수가 건설공사 전체 공종과 건설기계에 대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적용 시 불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현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장 먼지관리의 법적기준이며 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준수, 그 준수를 위한 ‘환경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 사용과 환경 교육, 현장 지도, 점검(컨설팅), 미세먼지 측정 등의 노력과 관리 내용으로 세부평가표로 평가)로 피해 배상액 산정을 하는 농도 예측 불가 시 공사장 먼지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안)을 제시한다.

*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재난안전전공 박사과정 j956461@hanmail.net

본 방안은 농도 예측을 하기 위한 측정 data의 확보와 건설공사 단위공종별, 기계장비별 배출계수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기 전까지 단계별로 점수를 상향화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본 안이 제도화된다면 건설사는 먼지피해 배상액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층 더 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에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먼지로 인한 환경, 보건 법규위반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노동 생산성 확보와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지급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 건설사에서 는 ESG (Environm Social Governance)경영 시대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서울시립대학교 대기오염연구센터, (2021). “미세먼지 미산정 배출원 배출특성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연구”. PP.21
- 국립환경과학원, (2015.2).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201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PP. 146
- S.-J.Wang.,S.-G.Yoon (2019.9). “Personal Countermeasures for Fine Dust”.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논문집. PP. 293
- H.-J. Yu, K.-Y.Han, K.-S.Kwak, J.-S.Kim, K.-Y.Yang (2004.12).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Effect of Dust Scattering in Construction Field”.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4 no.4 = no.14, PP. 110~112
- J.-H.Kim, H.-S.Kim, Y.-S.Kim, M.-G.Lee, Rajib.P,H.-K.Lee (2014) “광산란방식을 이용한 대기 중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 기상 조건에 의한 영향 분석”(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 PP. 124
- M.-K.Cho, H.-S.Yoon (2021.11). “Analysis of Domestic Fine Dust Damage and Management Policy”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논문집 PP.123
- 2015~2018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주요사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